(문의)

서보압공 플라스틱 쉬트 성형기: pet,ps,pvc,pc 등의 프라스틱 쉬트를 가열하여 금형틀의 모양으로 공기 압축 방식으로 성형하는 특수목적 기계
체코 수출 시 관련 인증?

(답변)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출 시 EU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참고 EU > EU member countries in brief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_en

유럽 전체 강제 인증: CE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필수 요건에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마크부착 시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CE 강제 인증대상품목은 24개 품목 별 지침(directive)/규정(regulation)으로 분류되며 제품이 이러한 지침/규정에 속할 경우 EU국가로 수출 시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단, CE 인증을 획득하는 데 있어 각 제품의 사양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Directive)/규정(regulation)이 달라지고, 2개 이상의 지침/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적용되는 지침/규정에 따라 인증 절차와 방법이 상이해 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따라서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자의 제품이 어떤 지침(Directive)/규정(regulation)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제품이 그 지침/규정(regulation)의 적용범위(scope)에 속할 경우 해당 지침/규정의 절차를 따라 CE 인증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합니다. 어느 지침/규정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 CE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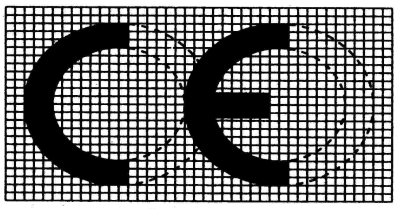
 # DoC란?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약자로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실시한 후 공인기관의 방문심사 없이 제조자가 직접 DoC를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기술 문서 준비 (Design Document)
1)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2)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3)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4)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5) 제품 테스트 리포트
6)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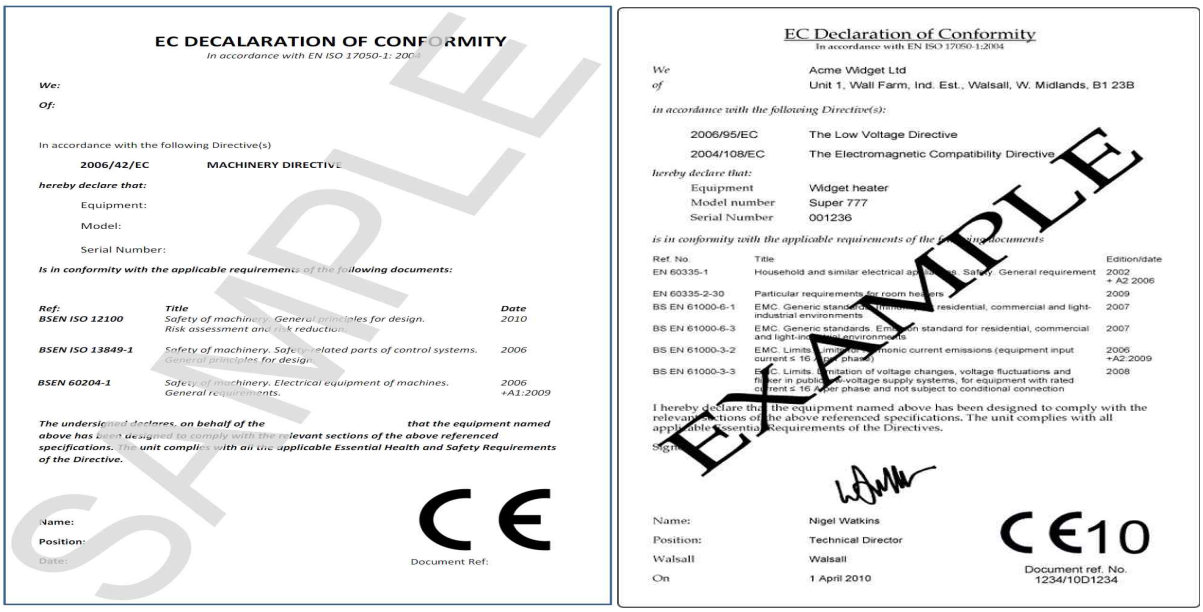
 #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1)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2)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넘버
3) 기계 평가에 사용된 standard, Harmonized standard
4) EC Type-examination의 인증서 번호
5) Full Quailty Assurance를 실시한 NB의 식별 번호와 이름
6) 적합성을 선언한 날짜
7) 제조사 내부 책임자의 서명

제품에 제17항 및 부속서 12에 따른 CE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CE마크 도안, 부속서 12 >



EC DECALARATION OF CONFORMITY

In accordance with EN ISO 17050-1: 200

We:

Of: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Directive(s)

2006/42/EC MACHINERY DIRECTIVE

hereby declare that:

Equipment:

Model:

Serial Number:

I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documents:

Ref:	Title	Date
BSEN ISO 12100	Safety of machinery.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	2010
BSEN ISO 13849-1	Safety of machinery. Safety 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2006
BSEN 60204-1	Safety of machinery.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 General requirements.	2006 +A1:2009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that the equipment named above has been designe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bove referenced specifications. The unit complies with all the applicable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of the Directive.

Name:

Position:

Date:

Document Ref:

SAMPLE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In accordance with EN ISO 17050-1:2004

We Acme Widget Ltd

of Unit 1, Wall Farm, Ind. Est., Walsall, W. Midlands, B1 23B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Directive(s):

2006/95/EC The Low Voltage Directive

2004/108/EC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hereby declare that:

Equipment Widget heater

Model number Super 777

Serial Number 001236

i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documents

Ref. No.	Title	Edition/date
EN 60335-1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General requirement	2002 + A2 2006
EN 60335-2-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oom heaters	2009
BS EN 61000-6-1	EMC. Generic standards. Immunity for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environments	2007
BS EN 61000-6-3	EMC. Generic standards. Emission standard for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environments	2007
BS EN 61000-3-2	EMC. Limits. Limits for harmonic current emissions (equipment input current ≤ 16 A per phase)	2006 +A2:2009
BS EN 61000-3-3	EMC. Limits. Limitation of voltage changes, voltage fluctuations and flicker in public low-voltage supply systems, for equipment with rated current ≤ 16 A per phase and not subject to conditional connection	2008

I hereby declare that the equipment named above has been designe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bove referenced specifications. The unit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Directives.

Signed

Name: Nigel Watkins

Position: Technical Director

Walsall Walsall

On 1 April 2010

CE10

Document ref. No. 1234/10D1234

EXAMPLE

<DOC 문서 발행 예시>

▶ CE 유의사항

CE 인증을 받고 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실시한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하거나 제3자 기관에 의한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구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제품 사양 및 용도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시어 상세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E DOC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CE Marking_Manufacturers (6번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클릭하여 다운로드)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

※ 국내 시험/인증기관

관련시험 후 CE마크를 표시하기 위해 **자세한 제품 사양 및 용도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시어 검토**를 받으시고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양과 함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진행이 가능한지 확인과 추후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험 기관별/품목별로 시험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인증비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CE 시험 가능여부를 조회할 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 국내 CE 인증대행기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국내인증기관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인증기관으로 CE인증 대행기관입니다. CE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적용규격 등의 상세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제품 사양을 송부하시어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기관에서 시험/인증 진행하실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담당자: 이준성 연구원 (CE MD)
  연락처: 02-2164-1496
  이메일: jungsung.lee@ktr.or.kr

-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www.ktl.re.kr
  담당자: 해외인증협력센터 이기석 (해외인증협력 총괄)
  연락처: 02-860-1330
  이메일: klee@ktl.re.kr

 #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NB: Notified Body)쪽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9251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기계 지침 Machinery Directive (MD)

귀사 제품은 EU 수출 시 기계 지침(MD)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사 제품의 사양 및 용도에 따라 적용지침 및 요구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귀사 제품 사양을 첨부하시어 관련 인증기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내 인증기관 참고)

▶ 기계에 적용될 수 있는 CE마킹 관련 지침 (Machinery Directive (MD) 2006/42/EC)

- 기계 지침 원문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42

- MD 조화규격리스트
European Commission > Machinery > harmonised standards under Directive 2006/42/EC on Machinery > Publications in the Official Journal 확인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machinery_en

기계류의 경우, 기계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가 있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Annex IV 제품(위험품목)이 아닌 경우, DOC 절차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CE 기계지침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귀사의 제품사양 및 정보를 첨부하시어 해당 인증대행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국내 CE 인증대행기관** 항목 참조)

▶ CE MD 인증절차 (* 참조 : 기계지침 DIRECTIVE 2006/42/EC)

일반적인 기계류는 위험성 평가 및 제조사에 의한 적합성 선언(DoC)을 포함하는 기술 문서 (T.C.F.)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ANNEX Ⅳ에 포함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공인된 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EC Type - Examination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 카 리프트, 승객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ANNEX Ⅳ 위험기계류에 포함되는 기계제품으로 각종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기계장비 제조기업은 아래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C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하여 EU공인 제품 인증기관에 해당 제품 검토하여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 위험성 평가 및 기술 문서 포함하는 정보를 공인된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검증 후 적합성 인증서 발행하고, 기계 장비 제조 기업은 적합성 선언 실시합니다.
→ 기계 장비 제조사가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합성 선언에 서명하고, 해당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E 기계(MD) 인증에 대한 절차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 (MD)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83
- EU > Machinery (MD)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machinery/

참고1] 인증 절차는 **유럽(EU) 기계지침** Article 1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속서IV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 부속서VIII에 따라 내부점검 적합성평가절차 진행 후 DoC

2) 부속서IV에 명시된 제품, 안전부품(Safety Compon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화규격(Article 7(2)의 Harmonized Standard)이 적용될 경우
   a) 부속서VIII에 따라 내부점검 적합성평가절차가 진행 후 DoC
   b) 부속서VIII, point3에 따라 내부점검 적합성평가절차 진행 + 부속서IX에 따라 인증기관의 EC 형식시험 후 DoC
   c) 부속서X에 따라 인증기관의 품질보장 절차 진행 후 DoC

3) 부속서IV에 명시된 제품, 안전부품(Safety Compon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화규격(Article 7(2)의 Harmonized Standard)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적용되거나,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
   a) 부속서IX에 따라 인증기관의 EC형식검사 + 부속서VIII, point3에 따라 내부점검 적합성평가절차 진행 후 DoC
   b) 부속서X에 따라 인증기관의 품질보장 절차 진행 후 DoC

※ 상기내용은 유럽기계지침원문 중 관련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임의로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원문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Article 12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of machinery

1. The manufacturer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in order to certify the conformity of machiner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apply one of the 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 described in paragraphs 2, 3 and 4.

2. Where the machinery is not referred to in Annex IV, the manufacturer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the procedure for assessment of conformity with internal checks o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provided for in Annex VIII.

3. Where the machinery is referred to in Annex IV and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sed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7(2), and provided that those standards cover all of the relevant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manufacturer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rocedure for assessment of conformity with internal checks o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provided for in Annex VIII;

(b)

the EC type-examin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Annex IX, plus the internal checks o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provided for in Annex VIII, point 3;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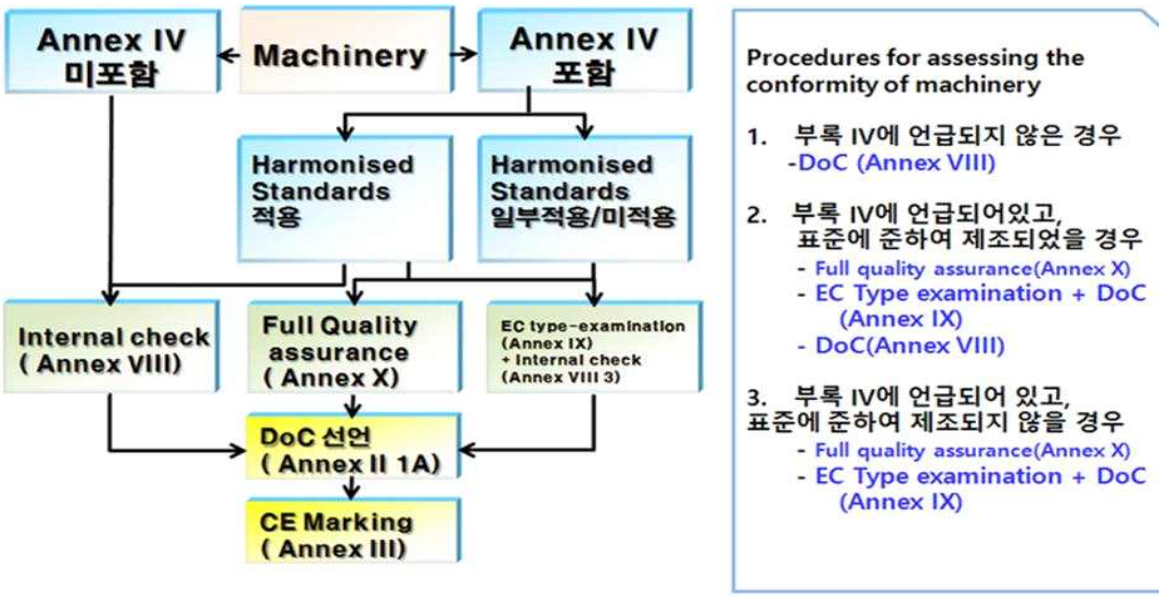
the full quality assurance procedure provided for in Annex X.

4. Where the machinery is referred to in Annex IV and has not been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sed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7(2), or only partly in accordance with such standards, or if the harmonised standards do not cover all the relevant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or if no harmonised standards exist for the machinery in question, the manufacturer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EC type-examin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Annex IX, plus the internal checks on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provided for in Annex VIII, point 3;
(b)
the full quality assurance procedure provided for in Annex X.

* 출처 기계지침 DIRECTIVE 2006/42/EC

참고2] 절차도



참고3] 조화규격(harmonized standard) TYPE



※ 출처

- EU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 2006/42/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42
- European Commission > Machinery
http://ec.europa.eu/growth/sectors/mechanical-engineering/machinery_en
- European Commission > Machinery (MD) harmonised standards (조화규격)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machinery_en
- Intertek(국제인증기관) > Understanding the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기계지침 안내서
http://www.intertek.com/uploadedFiles/Intertek/Divisions/Commercial_and_Electrical/Media/PDF/Industrial/Guidance-Machinery-Directive.pdf

압력장비 지침 Pressure equipment (PED)

유럽(EU)에서는 압력장비에 대하여 압력장비지침 Pressure equipment (PED) Directive 2014/68/EU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CE마킹을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특성상 CE PED (2014/68/EU) 적용대상(제품 사이즈에 따라 상이함)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CE PED에서 명시한 SEP(Sound Engineering Practice)에 해당되는 제품은 CE마킹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PED/SEP 최종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제품 상세 도면이 필요합니다. 세부 검토 후 적용이 확인 되면, 아래 내용과 같이 서류 준비 및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적용 모듈 및 인증 진행은 2014/68/EU 지침 및 적용 규격에 따라 확인 진행됩니다.

이는 귀사제품을 근거로 한 전문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압력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CE마킹 관련 지침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2014/68/EU)

- Directive 2014/68/EU PED 지침원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4L0068

- PED 조화규격리스트
European Commission > Pressure equipment > harmonised standards under Directive 2014/68/EU for Pressure equipment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pressure-equipment_en

귀사 제품의 사양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은 BSI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크기에 따라 EU 압력장비지침인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2014/68/EU에 속할 수 있으며, 해당할 경우 본 지침을 준수하고 CE마킹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링크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 참고

CE(PED) 인증 관련 추가정보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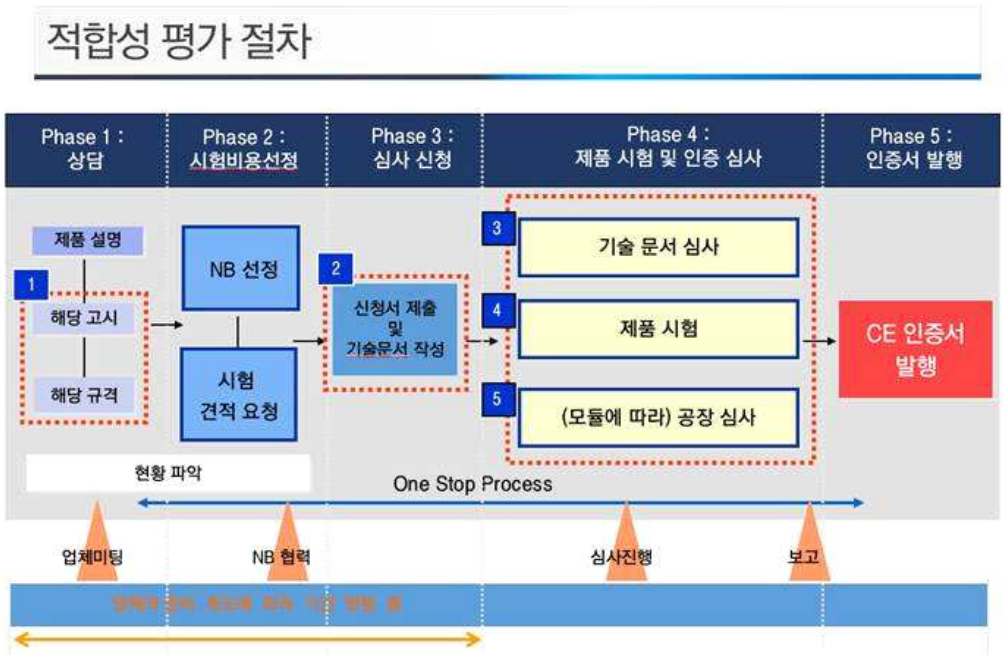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 (PED)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86

- European Commission > Pressure equipment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pressure-equipment_en

- European Commission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https://ec.europa.eu/growth/sectors/pressure-gas/pressure-equipment/directive_en

- European Commission > PED Guidelines
Guidelines related to th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PED)
(*참고로 97/23/EC (PED)는 개정 전 지침, 2016년부터 2014/68/EU지침 적용)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2ahUKEwjjwNqmwvHgAhVCObwKHbwiCIAQFjABegQIBRAC&url=http%3A%2F%2Fec.europa.eu%2FDocsRoom%2Fdocuments%2F21506%2Fattachments%2F1%2Ftranslations%2Fen%2Frenditions%2Fnative&usg=AOvVaw14Zbbx0RarcwO5yFsgKdua (다운로드 필요)

▶ CE PED 인증절차 (일반사항)



국가별 규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유럽의 규정을 넘어서서 더 엄격한 수준의 제품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몇 EU 회원국은 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 혹은 더 엄격한 국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지침 이외에 지적재산권, 오염규정, 포장, 라벨링, 제품안전(유해염료사용 제한 등) 같은 각 국가별 국내업계기준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유럽연합국 전체에 적용되는 EU 연합국 공통적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실제로 각 국가에서 유럽임의규격을 차용하여 강제화하거나 더 엄격한 국가규제를 별도로 두고 규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뿐 아니라 나라별 규제검토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각 나라의 관할기관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인증기관, 현지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는 EU 국가별 언어 지원 인력이 없어 회원국별 국내 규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 European Commission > Trade Helpdesk http://trade.ec.europa.eu/tradehelp/

참 고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european/KTMIUI010M.html
  영국 런던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OTRA trade doctor** 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40M.html?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사업 공고문 및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ktrInfo.do?key=9093
사업 문의 : 02-2164-0172~8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 당 100,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신청기간) 19.08.01.(목) ~ 19.08.30.(금) 18:00 (2019년도 지원사업 모집종료)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 중소기업수출지원 > 2019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요약
https://www.gg.go.kr/international-businessareas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해외조달시장정보 > 고객지원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http://b2g.exportcenter.go.kr/service/customer/qna/qna_list.jsp

유 의 사 항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